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직계비속”
을 “직계혈족”으로, “자녀”를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나. (생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생략) 2.·3. (생략)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 ----- ----- ----- ----- ----.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직계혈족-- 직계혈족----- ----- -----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매 라.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